

의안번호	2204276
의 퇴 인	이언주의원
회 답 일	2024. 11.11 .
추 계 번호	24D40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¹⁾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2026년 1조 2,389억원, 2030년 1조 1,268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조 9,189억원(연평균 1조 1,83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안 제6조)	12,315	12,043	11,768	11,484	11,185	58,795	11,759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 훈병원 전액 지원 (안 제7조제1항)	74	77	79	81	83	395	79
합 계	12,389	12,120	11,847	11,565	11,268	59,189	11,83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함	의무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조제1항 (의료지원)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	-
2	안 제7조제1항(의료지원)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액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으로 가정하여 추계하였음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개정(2015년 7월)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²⁾"으로 개편된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저생계비로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6조제7항)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4년 기준 116,154명으로 통계청 연령별 남자사망률³⁾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97,516	89,277	81,668	74,615	68,0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행 월 지급단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이, 2024년 42만원, 2025년에는 45만원 인상 예정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7.3%임

2)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3) 2024년 생존 참전유공자 중 남자가 97%이므로 남자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3]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 추이: 2021~2025년

(단위: 천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정)	연평균 증가율(%)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	340	350	390	420	450	7.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른 월 지급단가) 개정안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단가를 추정함

[표 4]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1~2025년

(단위: 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1,944,812	2,077,892	2,228,445	2,392,013	7.0

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안 대비 현행 지급단가 차이) 추가적인 비용발생분은 개정안에 따른 지급단가에서 현행 지급단가의 차액만큼 될 것으로 추정됨

[표 5]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월지급단가 차이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개정안 (a, 기준 중위소득×60%)	1,535,047	1,641,831	1,756,044	1,878,202	2,008,858	7.0
현행 (b)	482,665	517,701	555,281	595,588	638,821	7.3
차이 (a-b)	1,052,382	1,124,130	1,200,763	1,282,614	1,370,036	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재정소요) 위에서 산출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에 개정안에 따른 지급단가와 현행 지급단가의 차액만큼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표 6]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으로 인상 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자 (a, 명)	97,516	89,277	81,668	74,615	68,034	-
단가차액 (b, 천원)	1,052	1,124	1,201	1,283	1,370	-
소요비용 (a×b×12, 억원)	12,315	12,043	11,768	11,484	11,185	58,795

주: 단수조정으로 소요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의료지원 전액 면제 (안 제7조제1항)

□ 개정안에서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현행 90%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현황) 모든 참전유공자는 현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본인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는 아래와 같이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어 추계기간 동안 보훈병원 진료비는 연평균 2.6%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표 7]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입원	6,543	7,721	8,025	7,401	8,804	7.7%
외래	19,234	18,421	18,378	17,332	18,808	-0.6%
약제	30,707	33,915	34,663	34,449	34,982	3.3%
합계	56,484	60,057	61,066	59,182	62,594	2.6%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개정안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보훈병원 진료비를 전액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을 1세별 현황 자료에 통계청 남자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위에서 산출한 보훈병원 진료비에 1.1배(=100%/90%)를 곱하여 추정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음

[표 8]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전액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a, 명)	97,516	89,277	81,668	74,615	68,034	
75세 이상자(b, 명)	96,407	88,968	81,630	74,614	68,034	
75세 이상자 비중(c, %)	98.9%	99.7%	99.9%	100.0%	100.0%	
현행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d, 백만원)	67,606	69,365	71,169	73,020	74,920	
현행법에 따른 75세 이상 보훈병원 진료비(e=d×c, 백만원)	66,838	69,125	71,169	73,020	74,920	
개정안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f, 백만원)	74,264	76,806	79,077	81,134	83,244	
차액(f-e, 백만원)	7,426	7,681	7,908	8,113	8,324	39,4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단가를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보훈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조 9,18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9]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 및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면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12,315	12,043	11,768	11,484	11,185	58,795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면제	74	77	79	81	83	395
합 계	12,389	12,120	11,847	11,565	11,268	59,18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